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07

발의연월일: 2021. 3. 18.

발 의 자: 홍문표·정진석·윤재옥

정경희 · 김희곤 · 성일종

정운천 • 배준영 • 정찬민

이 영 · 윤재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 면허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 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나.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제 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8조제4항).
-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및 제2항).
- 라.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 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 장함(안 제16조제1항).
- 마.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 바.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② (생략) 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 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1일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4)**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 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 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 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ι	구에	해대	강하	는	경우	우에	는
경경	감된	취목	투세를	를 취	추징	하도], >	₩3
호	및	제42	호의	경우	우에	느	ユ	해
당	부분	른에	한정	하이	겨 7	경감	된	취
득기	네를	추기	싱한τ	구 .				

1. ~ 3. (생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③ (생 략)

④「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전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20</u>
26년 12월 31일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저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

<u>2026년 12월 31일</u>
1. ~ 5. (현행과 같음)
②
<u>2026년 12월 31일</u>
세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 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 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 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 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 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 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2026년 12월 31일</u>
<u>.</u>
1 ~ 2 (혀해과 간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 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 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 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1년 <u>12월 31일</u>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 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 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202</u>
<u>6년 12월 31일</u>
<u>20</u>
26년 12월 31일

- 1. ~ 4. (생략)
- ③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8. (생략)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전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1년 12</u>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6. (생략)
 - ② ~ 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5
<u>2026</u>
<u>년 12월 31일</u>
1. ~ 8.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6년 12</u>
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